

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 방역 지원 및 위생해충 구제방안에
관한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3년 11월 29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엄셋별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
제3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11월 29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엄셋별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감염병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역 지원 및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목적(안 제1조)
 - 다른 법령과의 관계(안 제2조)
 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 - 대상 지역(안 제4조)
 -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(안 제5조)

- 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(안 제6조)
- 주민방역단 지원(안 제7조)
- 위생해충 구제 사업 추진(안 제8조)
- 비밀준수의무 및 협력체계, 홍보(안 제9조 ~ 제11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감염병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역 지원 및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
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감염병 방역 지원과 위생해충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
 - 안 제4조에서는 장소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방역활동과 위생해충 구제 방안 시행에 대하여
 - 안 제5조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과, 위생해충 등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 - 안 제6조에서는 주민방역단 구성 및 임무에 대하여
 - 안 제7조에서는 주민방역단 지원에 대하여
 - 안 제8조에서는 위생해충 구제 사업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1조에서는 감염병을

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취,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최근 대구의 대학교 기숙사, 인천의 찜질방 등에서 발생한 빈대 출몰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음.
- 본 조례 제정안은 구민들을 위생해충 등에 의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조례로 시의적절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